

2022년 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보고

I 감사개요

- 감사범위 : 2019. 10. 26. ~ 감사일 현재
- 감사기간 : 2022. 02. 21. ~ 02. 25.(5일)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4명

II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20건 / 시정 7건, 주의 13건
- 재정상 조치 : 6,439천원 / 회수 6,439천원
- 신분상 조치 : 해당 없음

III 주요 지적사항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상품권 구매,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로 4회에 걸쳐 ****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함.

2) 회계관계공무원 부재 시 직무대리 미지정

직무대리자 지정 없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승인 후 지출

-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기업출납원(소장)이나 지출원(관리담당주사)이 연가(휴가)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원인행위 2건, *****천원과 지급명령 8건, *****천원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부재중인 기업출납원, 지출원의 아이디로 승인함으로써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2] 물품관리분야

1) 미승인 정수물품 구입 부적정

정수배정 승인 등 절차 없이,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 정수관리대상물품은 회계연도 마다 소관 예산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물품관리관의 정수배정 심사(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하여야 함에도,
- 수도사업소에서는 2건 ****천원 상당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을 매입하면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도 반영하지 아니하고 정수물품 대체 취득 승인요청 및 배정승인 등의 절차도 없이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채 물품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3] 계약분야

1) 지정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미이행

지정폐기물(폐석면) 분리발주 無, 석면해체등록업자 부적정 일괄발주

- 폐석면(폐슬레이트 등)은 지정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 수도사업소에서는 '□□□□□□□□ 주민지원사업 석면처리용역' 등 2건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폐석면)을 위탁 처리 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석면 해체·제거(공사)와 분리하여 적법한 자격을 갖춘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인 (주)◆◆◆◆(대표 ㉠㉠㉠)에 일괄 발주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수의계약 금액 결정 부적정

1인견적 수의계약 시 비교검토·가격협상 없이 견적가격 그대로 계약금액결정

-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을 제출 받는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방상수도 ㉡㉡가압장 가압펌프 수선' 등 2건에 대하여 공사(수선)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가격에 대한 비교검토와 가격협상(수의시담) 없이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절감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건설공사분야

1) 거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리·감독 소홀

공사비 감액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및 정산 조치 無

-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토목, 건축, 기계 조정)(1차)'을 시행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시공상세도면의 예정수량에 미달되어
- 공사비 약 ****천원의 감액요인인 발생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 까지 설계변경 및 정산 조치를 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하였음.

2) 상하수도 관로공사 관리·감독 소홀

상수도 관로공사, 시방서 등 관련 규정 미준수 시공(준공)

- 관로공사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매설관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 하단부에 모래를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하며, 관로 상단부에는 매설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로표시못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 '☆☆☆ ◆◆마을 급수관로 정비공사'등 4건은 관로보호용 모래를 설계도서 및 제반 시방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하였으며, '⊙⊙⊙ □□마을 송수관로 정비공사'는 매설관 관리를 위하여 시공하여야 할 관로표시못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상·하수도분야

1) 민간위탁 업무 및 관리 소홀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미제출 및 위탁기관 운영성과평가 미실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기관 모집 공고 전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사업별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수도시설 관리’ 위탁 협약을 위한 위탁기관 모집 공고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며,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2)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관리 부적정

준공검사확인증 대행업자 미교부 및 수도미터기 미봉인

- 「거창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에 따라 대행시공업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3일 이내에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군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고 수도 미터기에 봉인하여야 함에도
- 수도사업소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상수도 급수 공사를 대행하여 처리하면서 준공검사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 하고, 이를 수도 미터기에 봉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사후관리 소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선계획 미수립 및 상급기관장 미보고

- 「하수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기술진단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함에도,
-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4개소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면서, 총 29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진단되었으나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환경관서의 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경상남도지사에게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보고하지 않는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